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12. 9.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 11. 17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0. 11. 18.

다. 상정일자 : 제15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2010. 12. 3)

상정, 심사, 보류

제15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위원회(2010. 12. 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강 선 속 가정복지과장

가. 제안이유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사회인식 개선과 출산장려를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생아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출산축하금” 이라고 함은 신생아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함

2) 지급대상자의 범위 (안 제3조)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 라 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하고,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구에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 보호자로 함을 규정

3) 지급기준 (안 제4조)

예산범위에서 출생아별로 10만원을 지급함을 규정

4) 지급신청 (안 제5조)

지급신청인(이하 “신청인” 이라 함)은 안 제3조의 지급대상자로 하고 거주지관할동장(이하 “동장” 이라 함) 및 민원여권과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서식의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함)와 구비서류를 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함을 규정

5) 지급절차 (안 제6조)

동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함)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함을 규정

3. 검토보고 (김건재 전문위원)

0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등에 근거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사회인식 개선 및 출산장려를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생아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0 지난 2005년 이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출산율인 1.71명에도 훨씬 못 미치는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출산율 저하가 지속될 경우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근로연령 상승, 소비·저축·투자위축과 정부 재정수지 악화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0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 서울시 각 자치구별 출산지원금 지원현황을 보면, 마포구를 제외한 24개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출산지원금 지원 형태도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대상과 금액에 많은 차이가 있음.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구는 5개구이며, 대부분 둘째아이부터 약 10-50만원을 지급하면서 둘째아이 이상 차등지급을 하고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첫째아이, 둘째아이 이상 구분 없이 신생아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안으로 2011년도 마포구 예산안에 3억7,38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구의 재정여건, 주민욕구 및 타구 지원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의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출산축하금 소요예산을 반영하였는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임.

0 본 조례안 중 수정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 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의”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출산축하금 정의를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하는 일정 금액” 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는 출산지원금이나 출산장려금에 해당하는 정의로 해석되므로 이를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하는 일정금액” 으로 수정을 요함.

안 제3조제1항 중 “지급대상자” 는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 로 한다)” 로 하여 약칭을 사용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 라 한다) 관내에” 는 “구” 와 “관내” 가 중복되므로 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 라 한다)에” 로 하며, “신청일 현재 구에 6개월 미만 거주자인 때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지급대상자가 된다” 는 규정은 6개월 미만 거주자인 때에는 지급대상 자격이 없어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일 현재” 는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안 제3조제1항에 “지급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고 규정하였음. 이는 부모 모두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부모 중 1사람만 거주할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되는

바, 이는 부와 모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도 되고, 부모 중 1사람만 거주하여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 또는 모가 거주지에서 각각 출생신고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으므로 조문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타구로 전출한 후에도 출산축하금 신청이 조문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안 제5조제2항 중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에서 “신청”을 “제출”로 용어를 수정하고, 안 제6조제1항제2호 중 “구 관내 주민등록”에서 “구”와 “관내”가 중복되므로 이를 “구”로 수정을 요함.

안 제6조제2항 중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자”는 안 제3조제1항에서 약칭을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로 하고, 안 제9조의 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본문 규정에 맞게 “지급대상 제외”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10.12. 9.

제 안 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조례안 제3조에 규정한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 출산축하금 “이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로 함. (안 제2조제2호)

나.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 라 한다)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이 경우 신생아는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로 함 (안 제3조제1항)

다. 안 제3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6개월이 지나야 지급대상자가 된다.” 를 신설함. (안 제3조제2항)

라.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15만원,

- 셋째아 이상 30만원을 출생아 별로 지급한다.”로 함. (안 제4조)
- 마.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1호”를 “지급대상자가 동장에게 별지 제1호”로 하고, “동장에게 신청”을 “제출”로 함. (안 제5조제1항)
- 바.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자”를 “지급대상자”로 하고, “말일까지의”를 “말일까지 접수된”으로 함. (안 제6조제2항)
- 사. 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지급대상 제외”로 함. (안 제9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의 제목을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 출산축하금 “이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안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이 경우 신생아는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6개월이 지나야 지급대상자가 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급기준)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15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을 출생아 별로 지급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1호”를 “지급대상자가 동장에

게 별지 제1호” 로 하고, “동장에게 신청” 을 “제출” 로 한다.

안 제6조제1항제2호 중 “구 관내” 를 “관내”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자” 를 “지급대상자” 로, “말일까지의” 를 “말일까지 접수된” 으로 한다.

안 제9조의 제목을 “지급대상 제외” 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p> <p>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p> <p>1. (생략)</p> <p>2. <u>“출산축하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 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u></p> <p>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① <u>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신청일 현재 구에 6개월 미만 거주자인 때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지급대상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 신생아는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 신 설 ></u></p> <p>② (생략)</p> <p>제4조(지급기준) <u>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아별로 10만원을 지급한다.</u></p>	<p>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p> <p>제2조(정의) (원안과 같음)</p> <p>1. (원안과 같음)</p> <p>2. <u>“출산축하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u></p> <p>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① <u>출산축하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이 경우 신생아는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u></p> <p>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6개월이 지나야 지급대상자가 된다.</u></p> <p>③ (원안과 같음)</p> <p>제4조(지급기준) <u>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15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을 출생아별로 지급한다.</u></p>

원 안	수 정 안
<p>제5조(지급신청) ① (생략) ②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 및 민원여권과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u>지급대상자가 별지 제1호</u> 서식의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생략)</p>	<p>제5조(지급신청) ① (원안과 같음) ② ----- ----- ----- ----- <u>지급대상자가 동장에게 별지 제1호</u> ----- ----- <u>제출</u>----- ----- ③ (원안과 같음)</p>
<p>제6조(지급절차) ① (생략) 1. (생략) 2. <u>구 관내</u>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생략)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의 <u>출산축하금 지급대상자</u>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확인란에 기록 및 서명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p>	<p>제6조(지급절차) ① (원안과 같음) 1. (원안과 같음) 2. <u>관내</u> ----- 3. (원안과 같음) ② ----- -----<u>지급대상자</u>----- ----- -----<u>말</u> <u>일까지 접수된</u>----- ----- ----- ③ (원안과 같음)</p>
<p>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략)</p>	<p>제9조(지급대상 제외) (원안과 같음)</p>